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윤영석·박덕흠·곽규택

조경태 · 서일준 · 백종헌

김태호 • 박대출 • 최형두

김종양 · 박형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5만 5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30%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2,40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한 도시로 현재에도 기업체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증산·사송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구 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의 경우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 원까지의 거리는 약 42km 이상으로서,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군 (市·郡)지역 중 40km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양산시청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약 50분이 소요되며 대 중교통(버스) 이용 시 직행 노선은 없고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됨.

이에 따라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 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까지 법원을 가야 하는 등 사법서비 스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가 요 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6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한편,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민이 동일하게 편리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향유하게 하려 함(안 제2조제3항).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1의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 원란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양산시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양산시

별표 2 중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부산고등법원란 중 울산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3의 부산고등법원란 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란 다음에 창원지 방법원 양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_n _n	41 11	Al 31 -1
ᅵ		OEALAI
1 18 37	0 1	
0 -		

별표 5의 부산고등법원란 중 울산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 21	이 차 되 어 가
축 상	축산광역시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5의 부산고등법원란 중 창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 다.

-i)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다만,
창 원		소년보호사건은 경상남도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의령군
	통 영	통영시・거제시・고성군
	밀 양	밀양시·창녕군
	거 창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진 주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양 산	양산시

별표 7 중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 부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 8일 현재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 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울산가정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 ②	제2조(설치)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법원행정처는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
	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u>있다.</u>